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284회 제2차 정례회

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직무대리 규칙안

검토보고서



2021. 12.

운영위원회 전문위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직무대리 규칙안

검토보고서

2021. 12.

운영위원회

1. 검토과정

- 안건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직무대리 규칙안
- 발의자: 김태형의원 외 7명
- 발의일자: 2021. 11. 25.
- 회부일자: 2021. 12. 3.
- 검토기간: 2021. 12. 3. ~ 12. 9.(7일간)

2. 제정이유

「지방자치법(법률 제17893호, 2021.1.12. 전부개정)」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달서구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,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제정 주요내용

- 가. 목적(안 제1조)
- 나. 법정대리(안 제2조)
- 다. 지정대리(안 제3조)
- 라. 책임(안 제4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59조, 제60조, 제103조
- 「직무대리규정」 제4조, 제5조

나. 비용추계: 비대상

5. 검토의견

-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(법률 제17893호, 2021.1.12. 전부 개정)」이 전부개정 되어 달서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이 의장으로 독립됨에 따라 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, 그 책임을 명백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안 제2조에서는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, 의장·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의장이,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팀장이 대리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음.
- 안 제3조에서는 대리하는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였음.
- 안 제4조에서는 대리하는 사람의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에 대해 규정하였음.
- 검토결과 본 규칙안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였고, 의장 및 사무국장의 직무대리에 대한 필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므로 별다른 이견이 없음.

< 이상 검토보고를 마침 >

[관 련 법령]

□ 지방자치법

제59조(의장 직무대리) 지방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.

제60조(임시의장)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.

제103조(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)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.
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·감독하고 법령과 조례·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·교육·훈련·복무·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.

□ 직무대리규정(대통령령 제26568호)

제4조(기관장과 부기관장의 직무대리) ① 기관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기관장이 기관장의 직무대리를 한다.
② 부기관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·국을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실·국의 순위에 따른 실장·국장(본부장·단장·부장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을 포함하며, 실·국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기관에서는 과장이나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부기관장의 직무대리를 한다.

제5조(기관장과 부기관장 외의 직무대리) ① 기관장과 부기관장 외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바로 위 공무원(이하 “직무대리지정권자”라 한다)이 해당 공무원의 바로 아래 공무원 중에서 직무의 비중, 능력, 경력 또는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. 다만, 과(담당관, 팀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소속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장이 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.